

---

**2021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세부 운영기준**

---

**2021. 2**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목 차

<b>1.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개요</b>	1
<b>2.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공통 운영기준</b>	4
<b>3.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단위사업별 운영기준</b>	7
3.1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7
3.2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	9
3.3 산업기술정보 제공지원	15
3.4 시제품(금형, 목업) 제작 지원	18
3.5 시험분석비 지원	22
3.6 홈페이지 제작 지원	24
3.7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26
3.8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28
3.9 국내 홍보·판로 지원	30
3.10 카탈로그 제작지원	32
3.11 모바일 앱 제작지원	34
3.12 제품 패키지 개선지원	36
3.13 온라인 (소형)회의 시스템 구축지원	38

# 1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개요

## 가. 사업목적

- 중소기업의 성공적 사업화 및 시·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나. 지원규모 : 기업당 연간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매칭 지원

## 다. 지원기간 : 2021. 3월 ~ 예산소진 시 까지

## 라. 지원내용 : 단계별 창안개발, 생산, 홍보·판로 등 맞춤형 기업지원

분 야	단위사업별 지원
창안개발	· 국내·외 특허출원, 국내·외 규격인증, 산업기술정보 제공 지원
제품생산	· 시제품 개발(금형, 목업) 지원, 시험분석 비용 지원
판로개척	· 홈페이지 제작, 국내·외 전시회, 모바일 앱 제작, 제품패키지 개선, 국내 홍보판로 지원(전문잡지, 홍보 동영상, 카탈로그), 온라인 회의시스템 구축

## 마. 지원대상

- 사업비 출연 시·군 소재 연매출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
  - 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군 내 소재한 기업
  - 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sup>1)</sup>을 영위하는 기업
    - 지식기반서비스업 :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별표1)

###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현황 (27개 시군) >

- 본 사(9) : 수원, 화성, 군포, 광주, 오산, 하남, 의왕, 여주, 양평
- 남부권(4) : 용인, 평택, 이천, 안성
- 서부권(4) : 부천, 시흥, 광명, 김포
- 북부권(10) :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구리, 양주,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중소벤처기업부 및 시·군 지정) 또는 벤처 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우대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내 입주기업 우대

### < 경기창업벤처센터 현황 (17개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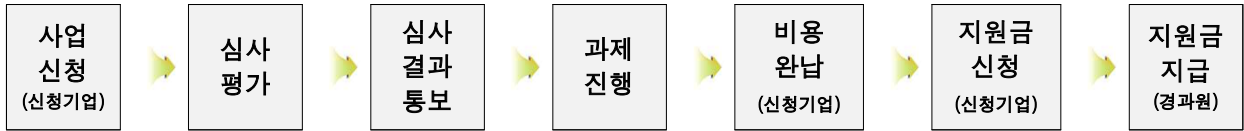
- 수원, 성남, 안양, 평택, 안성, 부천, 김포, 고양, 남양주, 의정부(1)(2), 파주, 구리, 양주, 포천, 의왕, 판교

-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
  -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별표2)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
  -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

### ※ 지식서비스산업

- 정의 : 제조업과 직·간접적 융합발전을 통해서 제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제조업과의 동반성장에 기여하는 업종
- 특징 : 최종 생산자에 중간 단계의 주요정보나 전문적 지식을 창출, 제공
- 중요성 : 높은 성장가능성과 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고용창출에 기여

## 바. 지원절차



## 사.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1. 사업 공고일 ~ 분기별 모집(3회)
  - 단, 신청 권역별 잔여예산 상황에 따라 추가모집 진행
-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www.egbiz.or.kr)
  - 홈페이지(온라인) 접속 → 권역별 중소기업 개발생산관로 맞춤형 지원사업 검색 → 단위 지원사업 클릭 → 신청하기 버튼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온라인 신청하기
- 제출서류 : 온라인 신청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담당자 요청 시 우편 또는 방문 접수

구분	제출서류
필수	① 단위사업별 신청서(온라인 작성)      ②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③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작성) ④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국세청 발급)      ⑤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⑥ 해당사업 견적서      ⑦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또는 세무서) ⑧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
가점 항목	·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경기도 주식회사 입점기업 · 국내외 각종 보유 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 아. 문의 및 접수처(\* 담당자는 변경될 수 있음)

권역(부서)	지역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본사 (SOS지원팀)	광주, 군포, 여주, 의왕, 오산, 하남, 양평, 화성, 수원	정기호	031-259-6059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북부권역 (북부권역센터)	고양, 동두천, 연천, 포천	양이나	031-850-7124	포천시 소흘읍 송우로 62 송우웰빙타운 8층 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남양주, 가평	임선빈	031-850-7128	
	파주, 양주, 의정부, 구리	이영주	031-850-7131	
서부권역 (서부권역센터)	시흥, 부천	김장식	070-7116-4811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한국산업기술대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광명	조수만	070-7116-4515	
	김포	김남수	070-7116-4816	
남부권역 (남부권역센터)	안성, 이천	이연희	070-7726-9325	안성시 중앙로 327 한경대학교 산학협력관 1층
	용인, 평택	이현아	031-651-7162	

자. 지원내용 : 기업 당 연간 최대 2,000만원 한도 내 지원

○ 총비용 50% 지원(각 과목별 지원한도 이내), 기업 자부담 50%

구분	지원 단위사업	세부내용	최대 지원한도 (지원비율)	비고
창안 개발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	· 디자인, 상표 출원 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상표출원 지원 : 국내·해외 / 디자인 출원 지원 : 국내)	특허(520만원) 실용(360만원) 국내상표(200만원) 국내디자인(280만원) 해외상표(500만원) (50%)	사후 지원
		· 실용신안, 국내 출원 시 관납료, 선행기술조사비, 대행 기관 수수료 등		
		· 해외특허 및 해외PCT 출원 시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500만원 (50%)	
	국내·외 규격인증 지원	· (국내) KS, KC마크 등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300만원 (50%)	사후 지원 (김포시 제외)
		· (국외) UL, FCC 등 해외 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	700만원 (50%)	
산업기술 정보제공	·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연구개발 아이템에 관련한 산업기술정보자료를 조사한 후, 기업체에 제공	200만원 (100%)		
제품 생산	신제품제작 지원 (금형·목업)	· 금형 및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의 촉진 및 조기 사업화 도모	금형(1,400만원) 목업(500만원) (50%)	
	시험분석 지원	·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시험분석비 지원	150만원 (50%)	사후 지원
판로 개척	홈페이지 제작지원	· 한글 /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 지원	200만원 (50%)	
	국내·외 전시 박람회 참가지원	· 국내·외 개최되는 공식 전시·박람회 참가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국내(300만원) 해외(500만원) (50%)	
	모바일 앱 제작 지원	· 기업 제품홍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글 또는 외국어로 된 모바일 앱 제작비용 지원	150만원 (50%)	
	제품 패키지 개선 지원	· 기업 판로 확대 및 제품홍보 위한 제품의 박스, 포장지 등 디자인·제작비용 지원	300만원 (50%)	
	온라인 회의 시스템	· 온라인 회의 시스템 도입 비용 지원	150만원 (50%)	
	국내홍보 판로 지원	전문잡지	· 기업 및 제품 홍보 광고비 지원	300만원 (50%)
홍보 동영상		·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물 제작비 지원 (일반영상 또는 3D 영상)	일반(300만원) 3D(400만원) (50%)	
카탈로그		· 수출 및 해외전시회참가 위해 국문 또는 외국어로 제작하는 제품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200만원 (50%)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

### 가.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로 추가 제출과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 수정 요청 기간 내 서류 보완이 없는 경우 접수에서 배제될 수 있음
- 사업 공고문 및 세부운영기준 등 유의사항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작성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 소명 절차 이후에도 기재사항 수정이 없거나 부정한 내용 등이 발견되는 경우 서류검토 단계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
-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전년도 재무제표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을 함께 제출
- 재무제표 작성·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국세청) 제출
-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 사업 신청 시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
- 사업비 출연시군소재 여부 및 휴·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 제출
  - ※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
- 공장등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제출
  - ※ 공장등록증은 불인정
-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 (www.bi.go.kr(창업넷) 확인), 시·군 지정 창업보육센터(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17개소) 입주기업 신청 시, 경기창업벤처센터 (입주계약서) 입주여부 확인

### 나. 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

- 사업 신청기업은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대행 업체를 선정하여야 함
- 사업 신청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인척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업체를 선정 할 수 없음

### 다.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요청

-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이 발생할 시에는 사전에 사업 신청서식 중 “단위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를 사업 담당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진행
- 사전승인 없이 대행업체, 과제범위 및 내용 등 주요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불인정
- 변경의 경우 대행업체 및 지원기간에 한하며, 선정된 지원과목의 변경은 불가함
  - 다만 불가피하게 총 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경우 사업 담당자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해야 함

## 라. 지원결정 취소사항

- 사업 공고일 이전에 이미 시행·완료된 경우(사후신청 사업은 제외)
-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
- 사업완료 시점 선정기업이 어떠한 답변 없이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완료 제출자료 보완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과제)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통보 후 직권 취소 처리할 수 있음
- 지원과제의 지출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지출한 비용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완료 불인정
-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
- 사업 추진 중 또는 사업완료 시점에 경기도 이외 지역 또는 사업비 출연시군 이외 (또는 신청 권역 이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
- 전문가 판단에 의거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 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
-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신청기업에 부도,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 마.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

-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부가세 포함)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 제출하면,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 이체 형태로 지급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 단,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출
- (법인)카드 사용 시 (법인)카드 사본, 카드사용 영수증, 결제한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 사본 자료 제출에 한에 비용증빙 인정
-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지원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
- 지원금 지급 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

## 바.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

- 선정기업의 사업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 미실시 등에 따른 사업 과제 미완료의 경우 해당 책임은 기업에게 있음
-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는 선정된 과제 종료 후 본 사업 만료 30일 이전까지 지출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 승인을 얻어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 종료”라 함은 선정 기업이 사업 완료 후 대행업체에 최종 비용 지급을 완료한 것을 말함
- “본 사업 만료”라 함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마감을 말함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 제출서류 : 지원금신청서, 완료보고서, 완료 결과물, 지방세납세증명서, 선정기업 통장사본(선정기업명 계좌)
  - 지출증빙 : 세금계산서,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요청한 자료 일체(필요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선정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사. 신청 및 선정대상 제외

- 공고일 기준,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① 민원야기,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
- ②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
- ③ 휴·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④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템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

#### 아. 위법·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

-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 시)
  -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 지원사업 단순 포기기업에 대한 제재사항은 각 센터(권역) 담당자가 상황에 맞도록 센터별 사업계획 시 수립



### 3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단위지원 사업별 운영기준

#### 3.1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지원

#####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에 의해 개발된 기술의 신속한 권리화를 유도하여 산업재산권을 기반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하기 위함

#####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 부가세 기업부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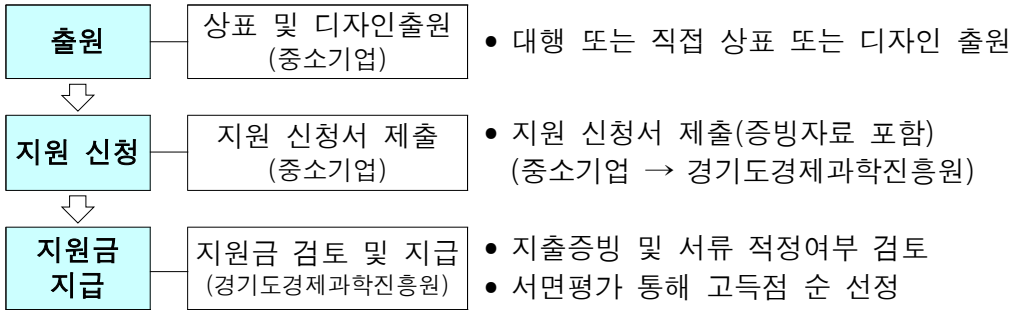
구분	지원분야	지원금액		지원내용
		건당 지원한도	업체당 지원한도	
국내	상표출원	25만원	총 비용의 50% 200만원 한도	- 출원에 따른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등 -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b>- 출원 후 지원신청</b>
	디자인출원	35만원	총 비용의 50% 280만원 한도	<b>- 출원 후 지원신청</b>
	실용신안	90만원	총 비용의 50% 360만원 한도	- 출원에 따른 관납료, 대행기관 수수료, 선행기술조사비용 등 -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b>- 출원 전 지원신청</b>
	국내특허	130만원	총 비용의 50% 520만원 한도	<b>- 출원 전 지원신청</b>
국외	해외특허	500만원	총 비용의 50% 500만원 한도	- 출원에 따른 관납료(송달료, 국제출원료 등), 대행기관 수수료, 선행기술조사비용, 번역료 등 - 자체 출원 시는 관납료 전액지원 <b>- 출원 전 지원신청</b>
	PCT (특허협력조약)	250만원	총 비용의 50% 500만원 한도	<b>- 출원 전 지원신청</b>
	해외상표	250만원	총 비용의 50% 500만원 한도	<b>- 출원 후 지원신청</b>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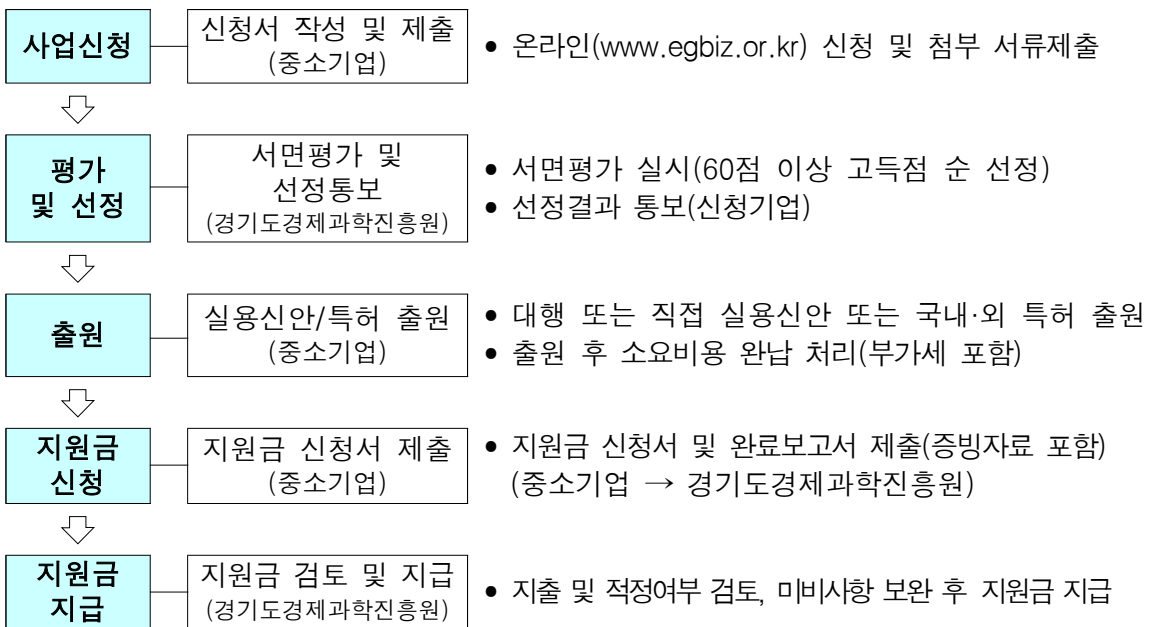
- 산업재산권 등록 및 유지비에 대해서는 지원제외
- 사업완료는 모든 비용증빙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실제 출원서 발급여부(출원번호 발급)를 기준으로 함(\* 출원 예정 불인정)
- 법인기업의 경우 해당 기업 대표이사 또는 해당 기업 내 출원 당사자 개인명의로의 산업 재산권 출원은 지원 제외. 단, 공동명의 가능(\* 공동명의 출원은 법인기업에 한함)
- 지원결정 전에 이미 특허출원(실용신안 포함)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지원제외
- 해외출원의 경우 출원서가 해외문서 시 국문번역 공증된 번역본 제출
- 지원결정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산업재산권 출원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 다. 지원절차

### ○ 상표(국내 및 해외) 및 디자인 출원(국내) 지원 : 출원 후 지원신청



### ○ 실용신안 및 국내·외 특허 출원(해외 PCT 포함) 지원 : 출원 전 지원신청



## 라. 제출서류

### ○ 상표 및 디자인 출원 지원(출원 후 지원신청)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대체)</li> <li>-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금 신청서 【제9호 서식】</li> <li>-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li> <li>-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li> <li>-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li> <li>-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견적서</li> <li>-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li> <li>- 산업재산권 출원 결과물 : 출원번호 통지서(서지)</li> <li>- 전자세금계산서, 관납료 등 영수증, 온라인 입금증</li> <li>- 신청기업 지원금지급 입금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li> <li>-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발급) (해당시 제출)</li> </ul>

○ 국내·외 특허 출원(해외 PCT 포함) 및 실용신안 지원(출원 전 지원신청)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대체)</li> <li>-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추진계획서 【제7호 서식】</li> <li>-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li> <li>-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견적서</li> <li>-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li> <li>-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li> <li>-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li> <li>-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해당시 제출)</li> <li>-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시 제출)</li> <li>-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해당시 제출)</li> </ul>
지원금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지원금 신청서 【제8호 서식】</li> <li>- 산업재산권 출원 결과물 : 출원번호 통지서(서지)</li> <li>※ 출원서가 해외문서 시 국문번역 공증된 번역본 필수 제출</li> <li>- 지방세납세 증명서(민원24)</li> <li>-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li> <li>- 전자세금계산서, 관납료 등 영수증, 온라인 입금증</li> <li>-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li> <li>※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li> </ul>

## 3.2 국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

###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 제품의 품질 신뢰 향상을 위한 국내·외 규격 신규 인증 획득지원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나. 지원내용

#### ○ 지원분야

- 국내규격 : 인증 획득 전 지원신청(사전신청)
  - KS,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 법정 임의인증 등 국내규격 [참고1]
- 해외규격 : 인증 획득 후 지원금 신청(사후신청)
  - UL, FCC, CSA, CE, GOST, CCC마크, JATE, VCCI 등 제품국제규격 인증 [참고2]
- 그 외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 ※ 단, 제출된 신청서 검토 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원여부 결정

○ 지원금액

구분	기업당 지원한도	세부항목별 지원한도		
		세부항목	지원한도	지원내용
국내	총 비용의 50% 300만원 한도	인증비용	인증비용의 50% 100만원 한도	국내규격 승인기관에 납부하는 규격 인증 수수료
		시험비용	시험비용의 50% 150만원 한도	시험기관에서 제품(샘플)에 대한 시험·분석에 따른 소요비용
		컨설팅비용	컨설팅비용의 50% 50만원 한도	규격취득 대행에 따른 컨설팅비(MD), 기술자료 제공료 등 기타비용
해외	총 비용의 50% 700만원 한도 (기업당 1제품 1분야에 한해 지원)	인증비용	인증비용의 50% 400만원 한도	해외규격 승인기관에 납부하는 규격 인증 수수료
		시험비용	시험비용의 50% 150만원 한도	시험기관에서 제품(샘플)에 대한 시험·분석에 따른 소요비용
		컨설팅비용	컨설팅비용의 50% 150만원 한도	규격취득 대행에 따른 컨설팅비(MD), 기술자료 제공료 등 기타비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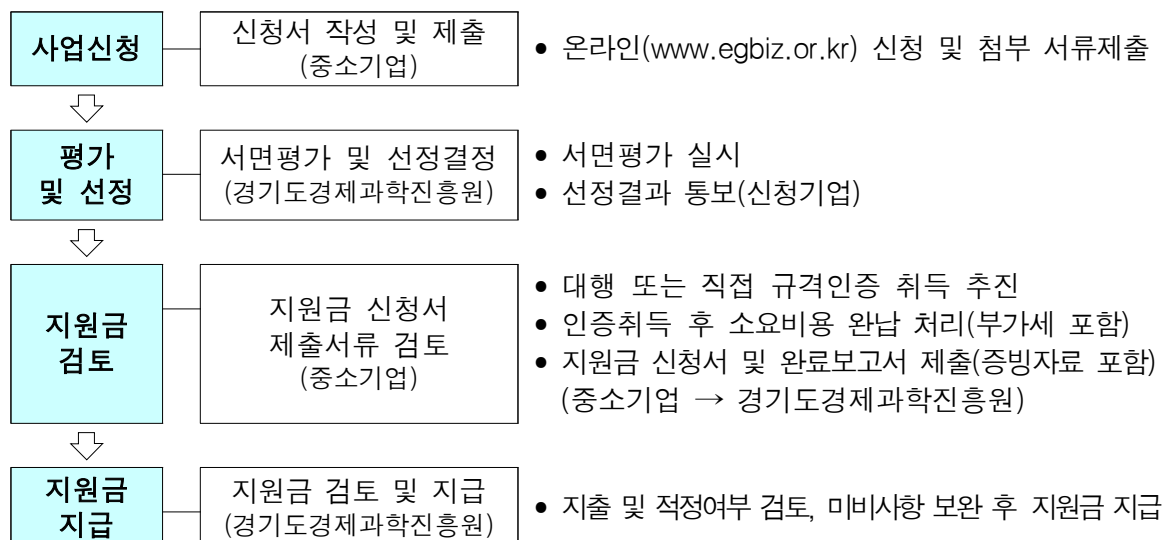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시스템 인증(ISO)은 지원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 규격인증 대행기관(인증기관, 시험기관, 컨설팅기관) 조건

- 해외규격 인증 획득 시 KOLAS인증, 국제기구(IECEE) 공인시험소, 해외승인기관의 지정시험소 등 공인된 시험실을 자체 보유한 기업(기관)으로 신청기업에 대한 인증 취득 대행이 가능한 기업(기관)
- 진행기관은 인증규격취득 시 제품시험, 컨설팅 등에 필요한 시험(장비, 인력)능력을 보유해야 함.

다. 지원절차



라. 제출서류

○ 국내규격 인증(사전 신청과제)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대체)</li> <li>-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 지원 추진계획서 【제10호 서식】</li> <li>-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li> <li>-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 견적서</li> <li>-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li> <li>-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li> <li>-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li> <li>-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해당시 제출)</li> <li>-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시 제출)</li> <li>-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해당시 제출)</li> </ul>
지원금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지원 지원금신청서 【제11호 서식】</li> <li>-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지원 컨설팅 완료보고서 【제12호 서식】 (컨설팅 추진 시 작성)</li> <li>-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지원 지도일지 【제13호 서식】 (컨설팅 추진 시 작성)</li> <li>-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li> <li>-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 결과물 : 규격 획득 인증서 사본, 시험성적서 등</li> <li>- 전자세금계산서, 관납료 등 영수증, 온라인입금확인증</li> <li>-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24)</li> <li>-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li> <li>※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li> </ul>

○ 해외규격 인증(사후 신청과제)

구분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지원 지원금신청서 【제14호 서식】</li> <li>-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li> <li>- 국내·외 규격 인증획득 결과물 : 규격 획득 인증서 사본, 시험성적서 등</li> <li>- 전자세금계산서, 관납료 등 영수증, 온라인입금확인증</li> <li>- 지방세납세증명서(민원24)</li> <li>-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li> <li>- 기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요청하는 증빙 일체</li> <li>※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li> </ul>

**[참고 1]**

**국내규격인증획득 지원 대상**

<p><b>[KS (한국산업규격)]</b></p>	<p><b>[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b></p>	<p>계량기의 형식승인 및 검정 승강기안전부품 안전인증 전기용품안전인증제도 방호장치 및 보호구의 성능검정제도</p>	<p>공산품 안전인증제도 공산품 자율안전확인 제도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 신고제도 가스용품의 검사제도</p>
<p><b>[그 외 법정강제인증]</b></p>	<p>무선기기 형식등록 전자파적합등록 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벽체 차음구조 인정 제도 열사용기자재 검사제도 건설기계 형식승인/형식신고 제도 교정용품의 검정 자동차배출가스인증 및 정밀검사 해양오염방지 자재·약제의 형식승인 고형연료제품 품질·등급 인증 항공기</p>	<p>전기통신기자재 형식승인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기능성화장품 및 신원료 심사 기계식주차장 안전도인증 및 검사제도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 공동주택바닥충격음 차단구조 인정 주력성능등급인정제도 의약품 제조업허가, 제조판매품목허가 및 신고, 수입품목 허가 및 신고 무대시설 안전진단 등 항공기부품</p>	<p>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의료기기품목허가(신고) 및 GMP인증 내화구조 인정제도 선박 및 선박용물건의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정도검사 자동차배출가스 결합확인검사 자동차 소음 인증제도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자동차부품 자기인증 자동차자기인증</p>
<p><b>[법정임의인증]</b></p>	<p>S마크인증 소방용기계기구성능시험 보건제품품질인증 한국산업인증(KS 인증) 신뢰성인증 물류표준설비인증 품질경쟁력우수기업선정 행정업무용S/W인증 도시철도용품품질인증 철도용품품질인증 우수건설기능식품제조기준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신기술인증(건설)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종합물류기업 인증</p>	<p>보건신기술인증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 신재생에너지설비인증 신제품인증(NEP) 소프트웨어품질인증 소방용기계기구 우수품질인증 환경표지제도 우수농산물인증 우수산업디자인상품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 우수 화물운수사업자 인증 신기술인증(일반) 전통식품인증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정보보호제품 평가인증</p>	<p>지능형건축물인증 친환경건축물인증 친환경농산물인증 환경성적표지인증 수산물 및 수산특산물 품질인증 수산전통식품 품질인증 신기술인증(환경) 싱글PPM품질인증 임산물 품질인증 성능인증(EPC) 식품HACCP 축산물HACCP eTrust인증 운행경유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의 인증</p>
<p><b>[민간인증]</b></p>	<p>한국가구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실내공기청정기단체품질인증(CA마크) 친환경건축자재단체품질인증(HB마크) 한국금속올타리공업협동조합 한국상업용조리기계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상하수도협회단체표준 한국석회석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설비기술협회성능인증(KARSE)  가정용주방용구(쌍크대)단체표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단체표준 KPPS 표시인증 KOVA마크(단체표준)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우수EQ마크) 한국정수기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한국조명공업협동조합단체표준 콘크리트 호안블록단체표준 단체표준(한국플라스틱표준) 표시인증 Eco-Quality인증마크(EQ 인증마크) 안전관리 우수판매업체 인증(LPG판매)</p>	<p>품질보증제도(Q마크) K 마크제도(K마크) 광촉매인증 KOSHA 18001 인증 명품브랜드인증 오피스상품인증 LOHAS 인증 세라믹소재 신뢰성평가인증 국산의류인증 교육용컨텐츠 품질인증 HS(Hygiene-Safety) 마크 FI품질인증 Wellbix 인증 태극마크 절연성능 온도상승성능 단락성능 개폐성능 관광기념상품인증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ASP인증</p>	<p>SSS인증 제품안전성(S마크) 건마크 홀마크 명품마크 위생가공마크 원적외선마크 자외선차단마크 항가공마크 골드다운마크 향균마크 SF마크 안전완구표시(ST)마크 전자기장환경인증(EMF마크) 전자파환경인증(EMC) TTA인증 콜센터품질인증(CQ) 웰빙인증 한우판매점인증제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단체표준인증</p>

※ 단, 상기 외 규격을 신청할 경우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원여부를 결정

【참고 2】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 대상(241개)

1	AAR(미국철도협회)	25	AQSIQ(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49	CE(유럽공동체마크)
2	ABS(미국선급협회)	26	ARAI(인도자동차협회)	50	CEBEC(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3	ACMI AP(미국창작재료협회)	27	ARTC(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51	CFDA(중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4	ACRS(호주신뢰성인증)	28	AS(호주규격협회)	52	CGAC(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시험센터)
5	AD2000(독일압력용기인증)	29	ASME(미국기계학회)	53	CMA(중국계측학허가인증)
6	AdBlue(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30	ASTM(미국시험재료협회)	54	CNS(대만국가표준)
7	ADR(호주자동차안전및배기량규격)	31	A-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55	COFETEL(멕시코통신인증)
8	AEC-Q200(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32	ATP(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성인증)	56	Conforming Golf balls(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9	AEM(장비제조및서비스에관한국제무역협회인증)	33	BAA(일본자전거안전기준)	57	COSPAS-SARSAT(조난경보기위치정보제품인증)
10	AENOR(스페인규격협회)	34	BABT(영국통신기기승인)	58	COSQC(이라크표준)
11	AGA(가스안전인증-호주)	35	BAF표준(알리지협회)	59	CPRI(인도전기전력인증)
12	AGA(미국가스협회)	36	BBA(영국건자재인증)	60	CPSC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13	AHRI(미국계냉난방협회)	37	BIS(인도제품인증)	61	CPSIA(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14	ALE 1.0(RFID 제품인증)	38	BLUESIGN(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62	CQC(중국제품안전자율인증)
15	AMCA(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39	Bluetooth(블루투스제품인증)	63	CR(대만선급)
16	AMECA(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40	BOKEN(일본방직검사협회)	64	CSA(캐나다표준규격)
17	ANATEL(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41	BQB(블루투스제품간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65	CSEL(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18	ANMAT(아르헨티나의로기기인증)	42	BRCFOOD(식품안전글로벌규격)	66	CSQL(중국안전품질승인)
19	ANSI(미국규격협회)	43	BSI(영국표준협회)	67	CSTB(프랑스건축자재인증)
20	ANSI/ASHRA(미국냉동공조학회 규격)	44	BSI BS EN489(유럽열(히트)파이프지침)	68	CTI(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21	ANSI/BHMA(미국건축제품인증)	45	BSMI(표준검험국)	69	C-Tick(호주전자파적합성규격)
22	ANSI/BIFMA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46	BV(프랑스선급협회)	70	CU(러시아강제인증)
23	ANVISA(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47	CCC(중국필수인증)	71	DEMKO(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24	API(미국석유학회)	48	CCS(중국선급인증)	72	DGCRF(프랑스소비자보호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73	DIN(독일규격협회)	99	FSC(국제산림관리협회)	125	INMETRO(브라질강제인증)
74	DLC(북미에너지절감인증)	100	FTC(화염시험국제인증)	126	IRAM(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75	DLMS-COSEM(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101	GL(독일선급협회)	127	ISIRI(이란강제인증)
76	DNV(노르웨이선급협회)	102	Gold Seal(미국음용수관련인증)	128	ISO7096(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77	DOT(미국운수성)	103	GOST(러시아표준규격)	129	일본선박 형식승인)
78	ECOCERT(프랑스생산공장인증)	104	GOST-K(카자흐스탄인증)	130	JAS(일본유기제품인증)
79	Eco-Labeling(EU 환경마크)	105	GOTS(국제유기농섬유국제규격)	131	JATE(일본전기통신단말기기승인원)
80	EFSA(유럽식품안전청)	106	Greenguard (친환경인증시스템)	132	JET PVM(일본태양광인증)
81	e-Mark(유럽연합차량용부품안전인증마크)	107	GS(독일품질안전)	133	JIS(일본표준규격)
82	EMV(국제IC카드보안인증)	108	GTT(프랑스GTT선급)	134	JPAL(일본의로기기규제법)
83	ENEC(EuropeanNormsElectricalCertification)	109	G7Master(국제인쇄표준)	135	KEMA(네덜란드전기시험소)
84	Energy Star(미국에너지스타)	110	HALAL(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136	KOSHER(유대교식품적법인증)
85	EPA(미국환경보호국인증)	111	HAS(싱가포르의로기기등록)	137	KTW(독일식수관련인증)
86	ESV(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112	HC(캐나다의로기기인증)	138	KUCAS(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87	ETL SANITATION(국제보건위생인증)	113	HDMI(PC와디스플레이의인터페이스표준규격)	139	LFGB(독일식품용품법)
88	EU2092/91(EU의유기농식품인증)	114	HIRF (HighIntensityRadiatedFields)	140	LGA(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89	Regulation(EC)(유럽화학제품유해물질규제지침)	115	HSNO(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141	LPCB(보안및화재예방인증)

90	EU-MED(유럽선박장비인증)	116	IAPMO(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142	LR(영국선급협회)
91	F☆☆☆☆(일본친환경규격)	117	IC(캐나다산업성)	143	MiamiDade NOA(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주)
92	FCC(미국연방통신위원회)	118	ICASA(남아프리카공화국독립통신위원회)	144	MIL-STD-810G(미국육군장비규격)
93	FCN(미국식품접촉물질(재료)등록제도)	119	ICC-ES(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145	MOH(중국보건부인증)
94	FDA(미국식품의약품국)	120	IECEE(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146	MPA(유럽소비자보호시험소)
95	FIMKO(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121	IECEX(국제방폭상호인증)	147	MPHPT(일본우정통신성)
96	FIBC(산업용포장재의 정전분류)	122	IFOAM(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148	MPR2(전자파측정및검사국제규격)
97	F-mark(일본전기용품및부품)	123	i-LIDS(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149	NADCAP(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98	FMVSS(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124	IMQ(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150	NAL(중국통신인증)
151	NCHRP(미국고속도로관련시설물연구프로그램)	174	PatternApprovalCertificate(러시아계측기인증)	197	SIRIM(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152	NEMKO(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175	PCI(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198	S-mark(일본전기용품시험소)
153	NEPSI(중국방폭관련인증)	176	Profibus(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199	SNI(인도네시아국가규격)
154	NF(프랑스표준규격)	177	PSB(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	200	SolarKeymark(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155	NFPA1711(가연성제품의화재방지국제규격)	178	PSC(일본소비생활용품안전인증)	201	SONCAP(나이지리아강제인증)
156	NFRC (창호단열규격)	179	PSE(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202	SP(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157	NIJ(미법무성사법연구소)	180	PTCRB(북미휴대폰인증)	203	SRCC(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158	NIM(중국계량과학원)	181	RCM(호주전기전자장비인증규격)	204	SRRC(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159	NIOSH(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182	RDSO(인도철도인증)	205	TC(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160	NIPH(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183	REACH(유럽신화학물질관리제도)	206	TC005(정보사무기기효율국제인증)
161	NK(일본선급협회)	184	RINA(이탈리아선급협회)	207	TELEC(일본무선통신관련인증)
162	NMMA(미국요트보트트레일러관련인증)	185	RoHS(유럽전기, 전자장비유해물질사용제한)	208	TFDA(대만의로기기)
163	NOM(멕시코제품안전규격)	186	RS(러시아선급협회)	209	TGA(호주의약품규제기관)
164	NOP(유기제품인증)	187	RTN(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210	Toxproof(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165	NORSOK(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188	RussiaHygienicConclusion(러시아위생증명)	211	TRA(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166	NPC(소음공해규제기관)	189	SAIGLOBAL(호주품질보증협회: QAS)	212	TSE(터키강제인증)
167	NR(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부품수리인증)	190	SASO(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213	TUV(독일기술관리협회)
168	NRTL(미국국가인정시험소)	191	SCS (미국 과학적 친환경인증)	214	UPC(미국 배관 및 기계인증)
169	OE(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192	SEMI(유럽반도체장비인증)	215	USCG(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170	Oeko-tex(유럽섬유환경인증)	193	SEMKO(스웨덴전기기기협회)	216	USDA(미국농무성환경인증)
171	OFTA(홍콩이동통신인증)	194	SG-Mark(소비자제품안전인증)	217	VCCI(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172	OIML(국제법정계량기구)	195	SIL(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218	VDE(독일전기기술자협회)
173	Open ADR(전력수요관리인증)	196	SINCERT(고압전기제품및부품인증)	219	VdS(독일보험협회인증)
220	Vincotte(벨기에환경인증)	228	WRAS(영국수질협회인증)	236	일본위생허가
221	WaterMark(호주배관제품인증)	229	Z-WaveProductCertification(전자제품상호호환인증)	237	러시아의료기기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CertificateofMedicalDevices)
222	WELS(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230	3-A(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238	중국미생물수입등록
223	WHI(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231	소방안전증명서(러시아)	239	중국유기농식품인증
224	WHO	232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질관리및위생안전	240	중국수입참가제등록
225	WPC(인도통신기기인증)	233	일본건축자재평가	241	중국위생허가
226	WPS(선급용접절차승인)	234	일본ECOMark(일본친환경제품인증)		
227	WQA(미국수질협회)	235	일본불연재료인증		

※ 단, 상기 외 규격을 신청할 경우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지원여부를 결정



### 3.3 산업기술정보 제공지원

####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에게 핵심기술에 대한 맞춤형 지식정보 제공 및 정보 활용 교육을 통해 고도화 및 차별화된 기술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함.

#### 나. 지원내용

##### ○ 지원분야

- 기업의 핵심기술 및 주변 관련기술에 대한 전 세계 과학기술 정보조사 자료제공
  - 전 세계 저널논문,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특허, 규격, 기타분석자료 등
- 정보검색, 정보처리, 정보 분석, 산업재산권관련 등 정보 활용 교육 지원
  - 기업체 방문 및 그룹으로 교육(기업체 수요 조사 후 시행)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간 업무협약 체결로 신청기업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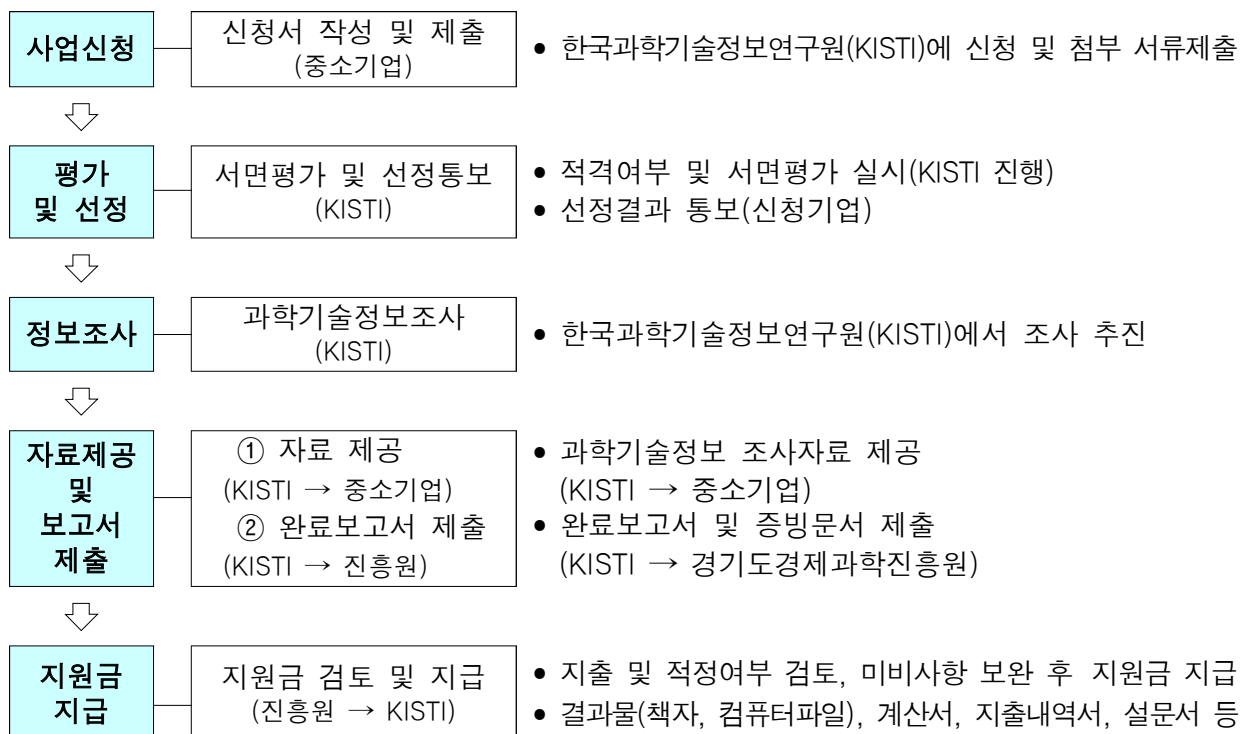
##### ○ 지원금액

- 총 소요비용의 100%, 최대 200만원 한도(기업 당 1회 지원)

#####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사업비 미출연 시군 소재기업은 지원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지원 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 다. 지원절차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기술정보제공 지원신청서 【제15호 서식】</li> <li>- 산업기술정보제공 지원 정보조사신청서 【제16호 서식】</li> <li>-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제1호 서식】</li> <li>- 기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요청자료</li> </ul>
지원금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산업정보제공 결과물 : 과학기술정보 제공 책자, 컴퓨터 파일 등</li> <li>-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지출내역서 일체</li> <li>-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li> </ul>

마. 문의 및 접수처

권역(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주소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SOS지원팀)	정기호	031-259-6059	수원시 영통구 광고로 107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구영덕	02-3299-6035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로

【참고 3】

## 제공되는 과학기술정보조사 Database 및 Content

Database	Content
 <p>www.yeskisti.net 과학기술정보포털사이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정보분석보고서, 기술동향, 과학기술문헌, 연구보고서, 인력정보 등</li> <li>한국특허, 미국특허, 일본특허, 유럽특허, 국제특허 제공</li> <li>총 66백여 만건 수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학분야의 전세계 우수 저널에 게재된 우수 연구정보를 포함하는 ISI Citation Indexes(인용 색인)을 제공하는 DB</li> <li>약 6,000여종의 기술문헌잡지 수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학분야 세계최대DB인 Compendex, 5,000여종 8백만건 보유</li> <li>전기전자분야 DB인 Inspec, 5,000여종, 8백만건 보유</li> <li>미국 주요기관이 발행하는 기술리포트DB인 NTIS 등 서비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 세계 4,000여개의 출판사, 14,000여종의 저널논문과 1억 6,700만개의 웹페이지를 동시 탐색</li> <li>혁신적인 이용자 중심의 인터페이스를 가진 초록/인용 데이터베이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국 Cas, 일본 JST, 독일 FIZ-Karlsruhe가 공동 참여하여 운영하는 세계 최대의 과학기술분야 데이터뱅크</li> <li>특허정보, 서지정보, 수치정보, 전문정보 등 200여종 D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특허청 : 국내외 산업재산권관련 정보제공</li> <li>일본특허청 : 일본 특허/실용신안/의장/상표 제공(일본어검색) (www.ipdl.ncipi.go.jp)</li> <li>미국특허청 : 미국특허/상표 제공(www.uspto.gov)</li> <li>유럽특허청 : 전세계 특허 및 실용신안 제공(ep.espacenet.com)</li> <li>세계지적재산기구 : PCT특허 검색(www.wipo.int)</li> <li>기타, 중국/대만 등 각국의 특허청</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Derwent Innovations Index(DII)로, 전세계 41개국 이상의 각 분야의 특허 정보 및 각 특허의 인용 정보 1,300만건 이상제공</li> <li>Derwent World Patent Index), Derwent Patent Citation Index), Derwent Chemistry Resources로 세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본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 및 해외 62개국 4국제기구의 특허정보인 INPADOC을 서비스</li> <li>현재, 일본특허/실용만 약 4천만건을 수록</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계 최고의 특허 정보원으로 3500만 건 이상의 특허 문헌 제공</li> <li>미국,유럽,일본,독일,PCT,INPADOC 등</li> </ul>

### 3.4 시제품(금형, 목업) 제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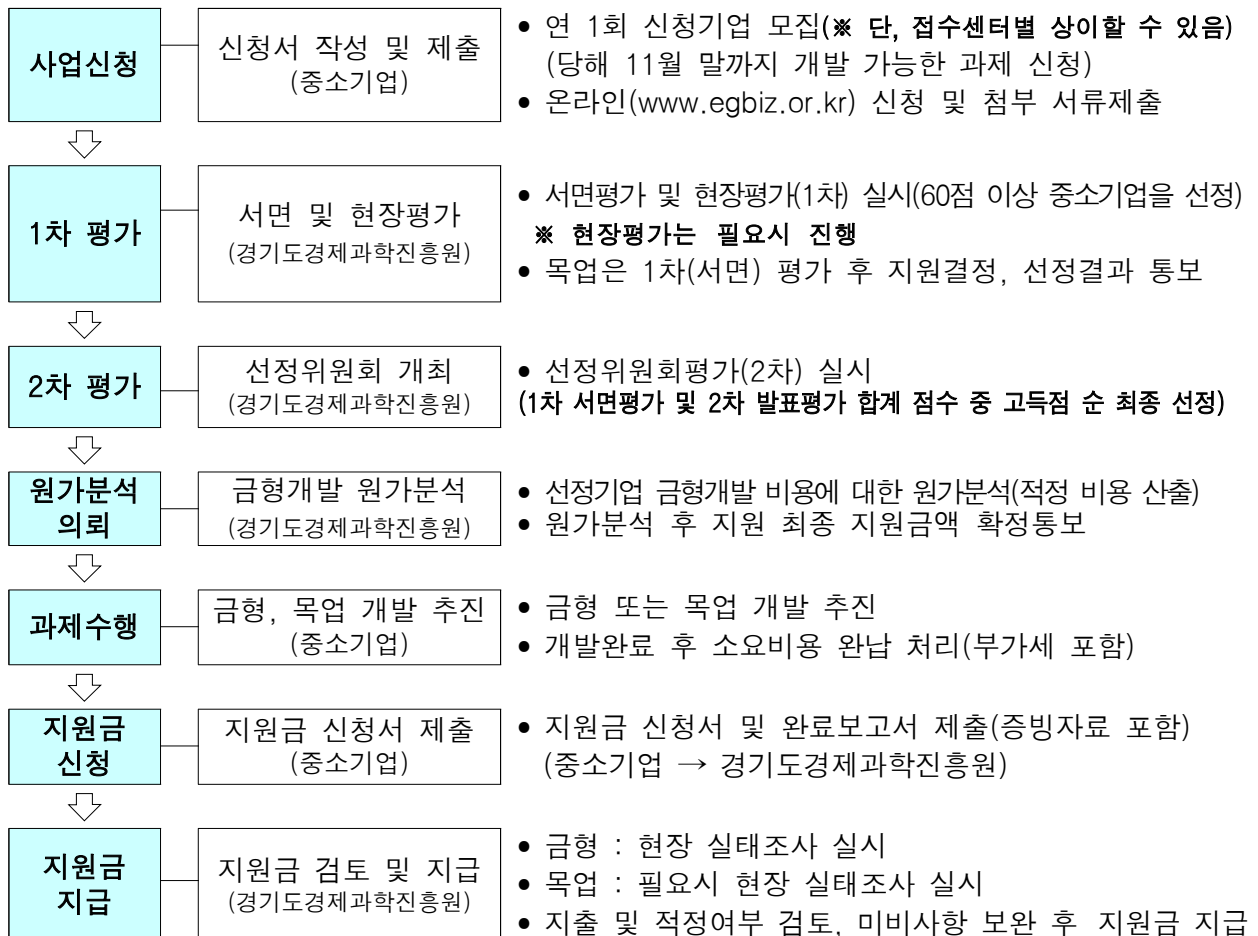
#### 가. 지원목적

- 우수 제품의 상용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중소기업에게 시제품(금형,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제품경쟁력 강화

####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금형 : 프레스 금형, 플라스틱 금형, 초경금형, 분말야금 금형, 다이캐스팅 금형, 단조금형, 압출금형 등
  - 목업 : 외관 목업, 워킹 목업, 전시용 목업
- ※ 자세한 분야는 【참고 4】 확인
- 지원금액 : 총 소요비용 50%(금형 1,400만원 한도, 목업 500만원 한도)
  - 금형 : 최종 선정 후 총 비용에 대한 원가 분석 후 지원 금액 결정
- 선정방법
  - 금형 : 1차 서면평가, 2차 발표심사(선정위원회)를 거쳐 지원결정
  - 목업 : 1차 서면평가 후 지원결정

#### 다. 지원절차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대체)</li> <li>- 시제품(금형/목업)개발 지원 추진계획서 【제17호 서식】</li> <li>- 시제품(금형/목업)개발 견적서 【제18호 서식】</li> <li>- 시제품(금형/목업)개발 세부견적서 【제19호 서식】</li> <li>-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li> <li>-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금형, 금속가공 등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업종 확인 必)</li> <li>-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li> <li>-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li> <li>-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발급) (해당시 제출)</li> <li>-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시 제출)</li> <li>-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해당시 제출)</li> </ul>
지원금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제품(금형/목업)개발 지원금 신청서 【제20호 서식】</li> <li>- 시제품(금형/목업)개발 지원 완료보고서 【제21호 서식】</li> <li>-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li> <li>- 시제품(금형/목업)개발 결과물 : 금형, 목업 도면, 결과물 사진</li> <li>- 시제품(금형/목업)개발 견적서</li> <li>-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li> <li>-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입금확인증</li> <li>-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li> <li>※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li> </ul>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시제품 제작 대행업체 선정의 경우 금형 및 금속 가공 등 실제 시제품 제작이 가능한 업체 선정 필수
  - ※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상 금형 및 금속 가공 관련 표기 확인 필수
- 해외 제작업체 통한 진행 불가. 국내 제작업체에 한하여 제작 인정함
- 금형(또는 목업) 제작을 주 업무로 하는 기업이 시제품 제작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 불가(선정 제외)
- 금형 제작의 경우 최종 산출물인 금형에 본 지원사업명 음각 표기 또는 명판 부착 요망
- 지출 증빙 시 어음 증빙형태 제출 불인정
- 접수된 과제(금형)가 이미 제작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지원 제외
- 개발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지원 제외
- 자본잠식 등 신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 최종 결과물(금형) 음각 표기 방법

- 현장실사 진행시 금형(Mold Base)에 음각표기 또는 명판 부착을 하여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진행

※ 표기 시안(예시)

완료일	0000년 00월 00일
금형 제작업체명	000000
지원사업명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사업

【참고 4】

시제품(금형, 목업) 지원 대상

금형종류		세 부 내 용
프레스 금형	제품류	- I.C, T.R 반도체 금형, 반도체리드프레임용 금형, Trimming & Forming 금형 - Connector & Terminal용 금형 - Motor Core용 금형 - Micro Switch용 금형 - Computer, VTR, Audio, Video, TV, Chassy용 금형 등
	금형류	- Progressive 금형 - 복합금형(Compound Die) - Fine Blanking 금형 - Multi Forming 금형 - Transfer 금형
플라스틱 금형	제품류	- 카메라, 현미경, 망원경, 복사기, 레이저, 안경렌즈용 금형 - 콤팩트디스크, 플로피디스크 및 동 케이스용 금형 - Audio & Video Tape Case용 금형 - 인공장기용 금형,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기어 금형 - Computer, VTR, Audio, Video, TV 캐비닛 및 백카바용 금형 -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자동차부품 금형
	금형류	- Rotational Mould - 이색사출 금형 - 파인세라믹용 금형 - Strecth Blow 금형 - 실리콘고무사출 금형 - 플라스틱사출Stack 금형
초경금형		- 초경합금으로 제작된 금형
분말야금 금형		- 금속분말을 고온고압으로 압축성형하는 금형
다이캐스팅 금형		- 정밀 다이캐스팅 금형
단조금형		- 정밀 냉간 단조 금형
압출금형		- 파이프 등 압출방식으로 성형하는 금형

목업종류	세 부 내 용
외관목업	- 외관상 디자인 등을 확인위해 만든 목업으로 내부의 기구적인 작동이나, PCB등이 없음.
워킹목업	- 내부에 기구적인 부분들과 PCB등이 모두 갖추어져서 실제 제품의 정상적인 작동 기능이 가능한 목업
전시용목업	- 전시회 참관이나 브로셔 사진제작 등 양산 전에 양산품과 똑같이 만드는 목업으로 도색과 후가공 등을 모두 완료한 목업

### 3.5 시험·분석비 지원

#### 가. 지원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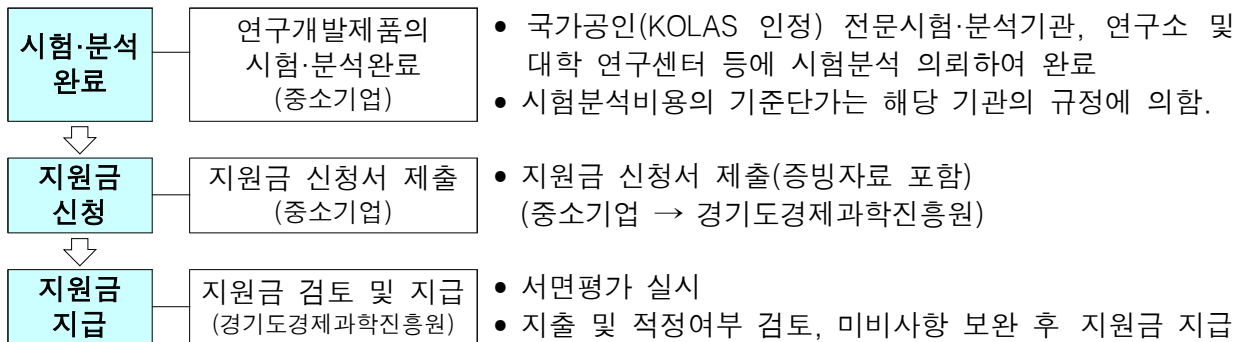
-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시험·분석비 지원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공률 제고

####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제품의 시험·분석 비용 지원
- 지원금액 :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150만원 한도(기업 당 1회 지원)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사업비 미출연 시군 소재기업은 지원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지원 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 다. 지원절차

##### ○ 시험·분석 완료 후 지원신청



####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대체)</li> <li>- 시험분석 지원금 신청서 <b>【제22호 서식】</b></li> <li>- 시험분석 지원 결과물 : 시험분석 성적서(제품 당)</li> <li>- 시험분석 견적서</li> <li>-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b>【제2호 서식】</b></li> <li>-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li> <li>-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li> <li>-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li> <li>-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입금확인증</li> <li>-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li> <li>※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li> <li>-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발급) (해당시)</li> </ul>



【참고 5】

국가공인(KOLAS 인정) 전문 시험·분석기관 외 시험·분석이 가능한 기관

구 분		대학 및 연구소(연구센터)
대학 및 연구소(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기대학교</li> <li>□ 경기과학기술대학교</li> <li>□ 경민대학</li> <li>□ 경희대학교</li> <li>□ 계원예술대학</li> <li>□ 김포대학</li> <li>□ 단국대학교</li> <li>□ 대진대학교</li> <li>□ 동서울대학</li> <li>□ 두원공과대학</li> <li>□ 명지대학교</li> <li>□ 수원대학교</li> <li>□ 수원여자대학</li> <li>□ 가천대학교</li> <li>□ 성균관대학교</li> <li>□ 신흥대학</li> <li>□ 아주대학교</li> <li>□ 연성대학교</li> <li>□ 오산대학</li> <li>□ 안산공과대학</li> <li>□ 용인송담대학</li> <li>□ 유한대학</li> <li>□ 한경대학교</li> <li>□ 청강문화산업대학</li> <li>□ 한국산업기술대학교</li> <li>□ 한국생산기술연구원</li> <li>□ 한국섬유소재연구소</li> <li>□ 한국항공대학교</li> <li>□ 한국폴리텍여자대학 등</li> </ul>
대학 연구센터 (10)	RRC/T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 원 대(환경청정기술연구센터,</li> <li>□ 전자부품소재기술혁신센터)</li> <li>□ 명 지 대(천연신기능소재연구센터) 등</li> </ul>
	GRR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 천 대(신소재응용 연구센터) 등</li> </ul>
	T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성균관대(기술혁신센터)</li> <li>□ 경희대(영상정보 소재기술 연구센터)</li> <li>□ 가 천 대(나노입자지역기술혁신센터)</li> <li>□ 수원여대(식품소재) 등</li> </ul>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 희 대(연구실험지원센터),</li> <li>□ 경기바이오센터(신약, 바이오등),</li> <li>□ 한경대(무기물, 오염물질 등)</li> </ul>

### 3.6 홈페이지 제작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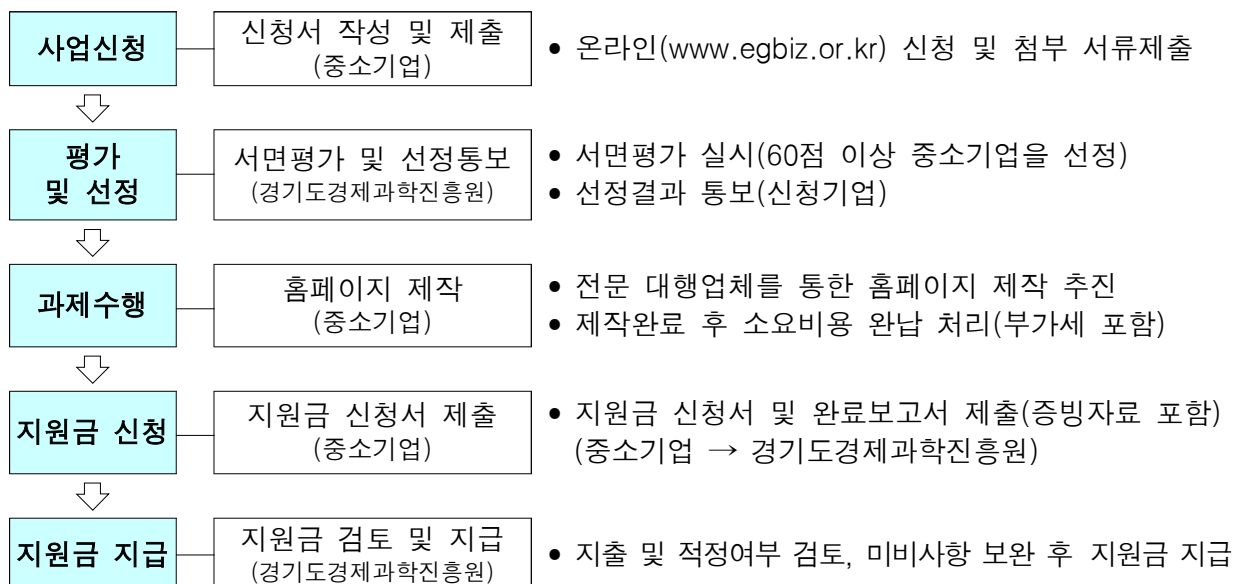
####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홈페이지 제작 지원을 통해 e-비즈니스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대내·외 경쟁력 제고

####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 한글이나 외국어로 제작하는 기업홈페이지 제작비 지원
- 지원금액 :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200만원 한도(기업 당 연 1회 지원)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쇼핑몰 제작은 지원에 해당되지 않음
  - 이미 제작 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과제 지원 제외
  - 기존 홈페이지의 단순 유지보수의 경우 지원 제외. 단, 사업 담당자 검토 후 신규 제작 수준의 개선일 경우 지원 가능
  - 웹호스팅 비용(서버, 도메인, 인터넷 사용료 등) 등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비용 지원 제외
  - 제작 시 자체 도메인(주소) 구입을 원칙으로 함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전문가(개인)에게 제작을 의뢰한 경우 지원 제외
  -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제작하는 경우 지원 제외
  -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 다. 지원절차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대체)</li> <li>- 홈페이지 제작 지원 추진계획서 【제23호 서식】</li> <li>-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li> <li>- 홈페이지 제작 견적서</li> <li>-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li> <li>-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li> <li>-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li> <li>-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해당시 제출)</li> <li>-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시 제출)</li> <li>-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해당시 제출)</li> </ul>
지원금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홈페이지 제작 지원금 신청서 【제24호 서식】</li> <li>- 완료보고용 제출 서식 【제6호 서식】</li> <li>-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li> <li>-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li> <li>-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입금확인증</li> <li>-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li> </ul> <p>※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p>

### 3.7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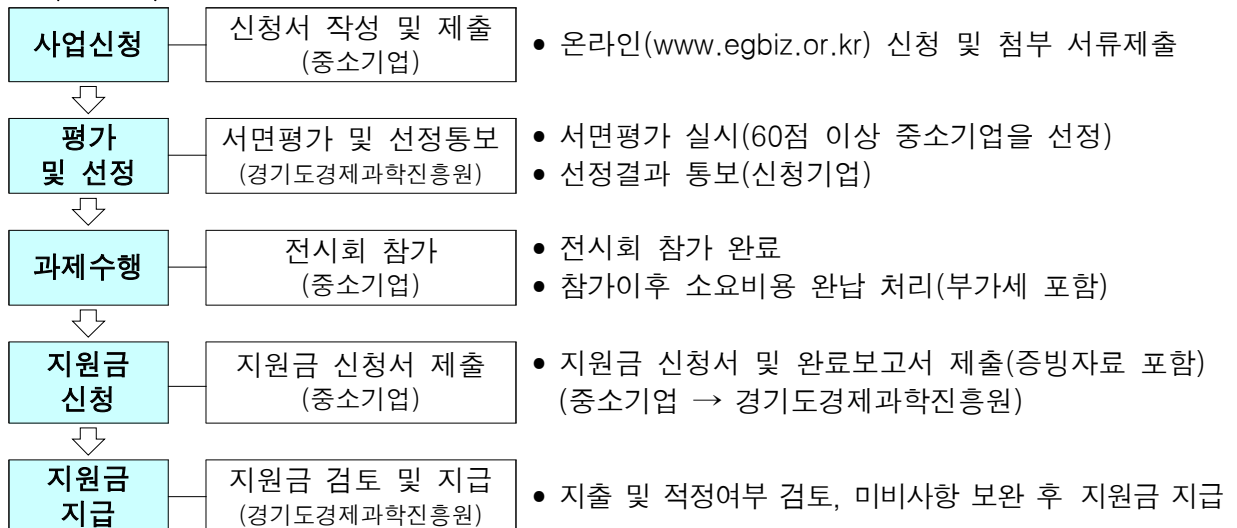
####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국내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해 판로확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지원

#### 나.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국내 전시회 참가 시 주최 측이 제공하는 기본 부스료, 기본 장치비 등
  - 기본 부스료 : 조립, 독립부스 임차료
  - 기본 장치비 : 전기, 전화(실비 제외), LAN(전용선), 고객관리(RF등록기)사용료, 압축 공기 사용료, 기타 전시·박람회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
- 지원금액 :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300만원 한도(기업 당 연 1회 지원)
  - 완료보고서 작성 시 전시참가 사진 첨부란에 반드시 해당기업이 임차한 부스 번호와 기업명이 보이는 전경사진(2매)과 해당기업이 임차한 부스와 인접한 타 부스들이 함께 촬영된 사진(2매) 첨부 필수
  - 기업명이 아닌 자사 내 브랜드명 또는 제품명으로 참여할 경우 완료보고서 제출 시 동일 기업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야함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국내전시회는 지원 제외(예 : G-Fair Korea, 시군별 단체관 참여 등)
  - 심포지엄, 학술대회, 세미나 등은 지원 제외
  - 기업 필요로 설치하는 디스플레이 비용(가구 인테리어 및 홍보물 제작(카탈로그, 디렉토리 등)비용,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은 지원 제외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지원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 다. 지원절차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p><b>지원 신청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대체)</li> <li>-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추진 계획서 【제25호 서식】</li> <li>- 국내전시박람회 견적서</li> <li>-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li> <li>-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li> <li>-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li> <li>-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li> <li>-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해당시 제출)</li> <li>-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시 제출)</li> <li>-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해당시 제출)</li> </ul>
<p><b>지원금 신청서</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금 신청서 【제26호 서식】</li> <li>- 완료보고용 제출서식 【제6호 서식】</li> <li>-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li> <li>-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li> <li>-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입금확인증</li> <li>-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li> </ul> <p>※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p>

## 3.8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

### 가. 지원목적

- 해외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해 해외기술 동향파악의 기회 마련 및 기업의 제품 경쟁력 강화 도모

### 나. 지원내용

- 지원내용 : 해외 전시회 참가 시 필요한 기본 부스료, 기본 장치비 등 비용 지원
  - 특정단체에서 시행하는 공동관이나 지정 전시회에 참가하는 것과는 달리 기업이 자체적으로 선택한 해외 전시회에 자부담으로 先 참가하고, 그에 따른 소요비용 일부를 지원함

#### ○ 지원범위

- 부스 임차비용(①), 부스 장치비용(②), 전시품 해상 편도운임 비용(1CBM)(③)

#### ③ 전시품 편도해상운임비용

- 항공운임비용 지원 불가.
- 1CBM 기준 산정이며, 전시품 국내 입고장소(운송회사 지정장소)에서 해외전시장까지 소요되는 해상 편도운임 비용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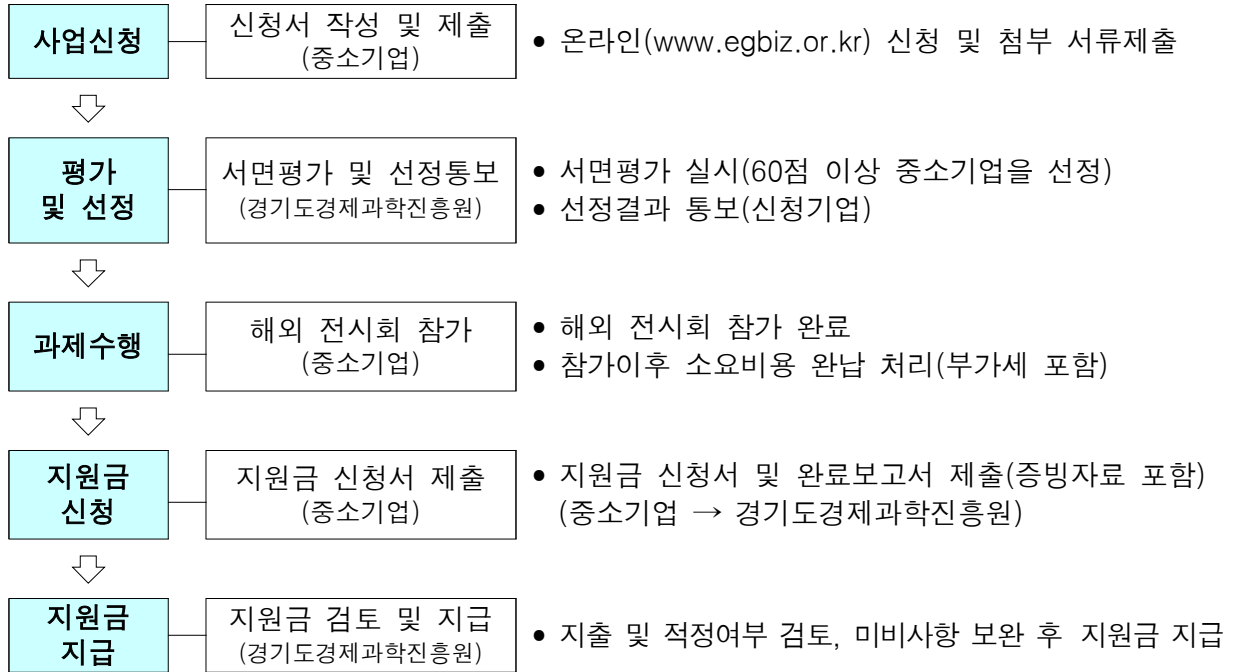
#### ○ 지원한도 :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500만원 한도(기업 당 연 1회 지원)

- 지원금 = { ① + ② + ③ - (관세 + 부가세) } × 50% (최대 300만원 한도)
- 완료보고서 작성 시 전시참가 사진 첨부란에 반드시 해당기업이 임차한 부스 번호와 기업명이 보이는 전경사진(2매)과 해당기업이 임차한 부스와 인접한 타 부스들이 함께 촬영된 사진(2매) 첨부 필수
- 기업명이 아닌 자사 내 브랜드명 또는 제품명으로 참여할 경우 완료보고서 제출 시 동일 기업임을 입증 할 수 있는 자료 제출해야함

####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정부 및 지자체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으로부터 이미 지원받은 기업 지원 제외
- 심포지엄, 학술대회, 세미나 등은 지원 제외
- 기업 필요로 설치하는 디스플레이 비용(가구 인테리어 및 홍보물 제작(카탈로그, 디렉토리 등)비용, 기타 경비성 지출비용은 지원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현금으로 비용을 지급하거나 선정기업 명칭과 Invoice상 기업 명칭이 상이할 경우 지원 제외
- 신청 전시회가 아닌 다른 전시회로 사전 승인 없이 변경하여 참가한 경우 지원 제외
- 선정된 기업 이외에 타사(해외지사, 대리점, 에이전트 등)의 명의로 참가하거나 타사를 통해 참가비용 또는 계약금을 대납한 경우 지원 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 다. 지원절차



##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추진계획서 <b>【제27호 서식】</b></li> <li>-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li> <li>-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li> <li>-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li> <li>-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li> <li>※ 전년도 재무제표가 미결산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전전년도 재무제표 제출</li> <li>- 전시회 Invoice(참가전시회 정보 / 비용내역)사본</li> <li>- 운임 비용 Invoice 사본</li> <li>-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해당시 제출)</li> <li>-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시 제출)</li> <li>-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해당시 제출)</li> </ul>
지원금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금 신청서 <b>【제28호 서식】</b></li> <li>- 완료보고용 제출서식 <b>【제6호 서식】</b></li> <li>-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li> <li>-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b>【제2호 서식】</b></li> <li>- 참가전시회 주관기관이 발행한 부스임차비 / 부스장치비 영수증(Invoice) 사본</li> <li>- 해상편도 운임 비용 영수증(Invoice) 사본 각 1부</li> <li>- 소요비용 입금내역</li> <li>※ 원화 입금시 외국환 거래계산서 첨부 또는 카드영수증(법인카드일 경우만 지원, 카드 내역서도 첨부)</li> <li>-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li> <li>※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li> </ul>

### 3.9 국내 홍보·판로 지원

####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판로 지원을 통해 판로확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지원

#### 나. 지원내용

##### ① 지원분야 : 전문잡지 광고비 지원

지원분야	지원금액	지원내용
전문잡지 광고비 지원	총 비용의 50%, 300만원 한도	- 국내 발행되는 분야별 전문잡지에 기업 및 제품홍보 광고비 지원

#####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기업별 산업군 또는 업종 내 특화된(전문) 잡지 광고지원으로 물가정보지 등 일반적인 잡지 광고 지원 제외(\* 사업 담당자 검토 후 지원 가능 여부 결정)
- 월간 발행 및 정기(분기별) 간행물 등 잡지 광고 지원 범위(기간)는 본 사업 만료일 이전으로 함(11월 분)
- 완료 후 광고 내용이 게재된 각 월별(분기별) 잡지원본 우편 제출 필수
- 잡지 인터뷰, 기사보도, 학회지 및 학술지 광고 지원 제외
- 이미 제작된 과제 또는 제작진행중인 과제를 제출한 경우 지원 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 ② 지원분야 : 동영상 제작 지원

지원분야		지원금액	지원내용
동영상 제작지원	일반영상	총 비용의 50%, 300만원 한도	- 기업 및 제품 홍보 위한 동영상물 제작 비용 지원 - 기업 당 연 1회 지원
	3D 영상	총 비용의 50%, 400만원 한도	- 기업 및 제품 홍보 위한 동영상물 제작 비용 지원 (AR/VR 및 기타 3D 영상물 제작) - 기업 당 연 1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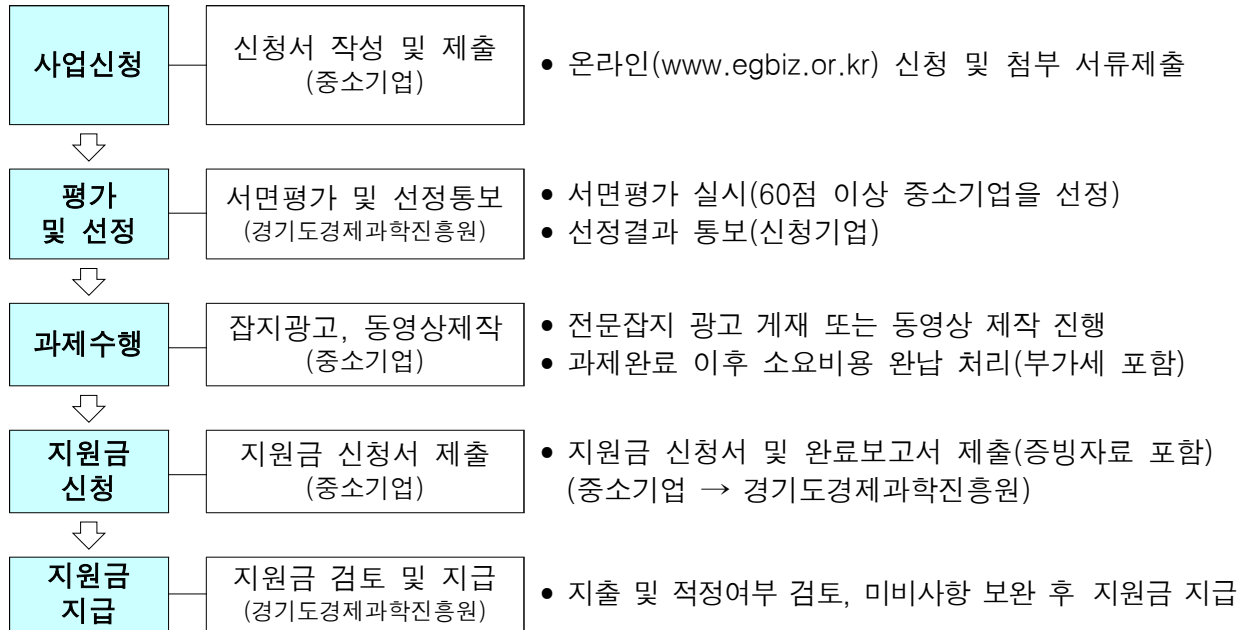
#####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지원 제외
- 동영상물 제작이 아닌 인터넷 사이트 보완 및 기능 전환위주로 제작하는 Web 3D 콘텐츠인 경우에는 지원 제외
- 완료 후 동영상 결과물 CD 또는 USB 우편 제출 필수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전문가(개인)에게 제작을 의뢰한 경우 지원 제외
-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제작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이미 제작된 과제를 제출한 경우 지원 제외



- 실제 제작 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지원 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 다. 지원절차



####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대체)</li> <li>- 국내홍보판로 지원(홍보동영상) 추진계획서 【제29호 서식】</li> <li>- 국내홍보판로 지원(전문잡지) 추진계획서 【제30호 서식】</li> <li>- 각 해당별 국내홍보판로 견적서</li> <li>-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li> <li>-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li> <li>-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li> <li>-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li> <li>-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해당시 제출)</li> <li>-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시 제출)</li> <li>-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해당시 제출)</li> </ul>
지원금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홍보판로 지원금 신청서 【제31호 서식】</li> <li>- 완료보고용 제출서식 【제6호 서식】</li> <li>-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li> <li>- 전문잡지 : 광고내용이 게재된 월별 잡지원본 (※ 우편송부)</li> <li>- 홍보동영상 : 동영상 결과물 CD 또는 USB(※ 우편송부_전체 및 30초 요약본)</li> <li>-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li> <li>-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입금확인증</li> <li>-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li> <li>※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li> </ul>

### 3.10 카탈로그 제작지원

####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카탈로그 제작지원을 통해 판로확대 및 대외경쟁력 강화지원

####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및 지원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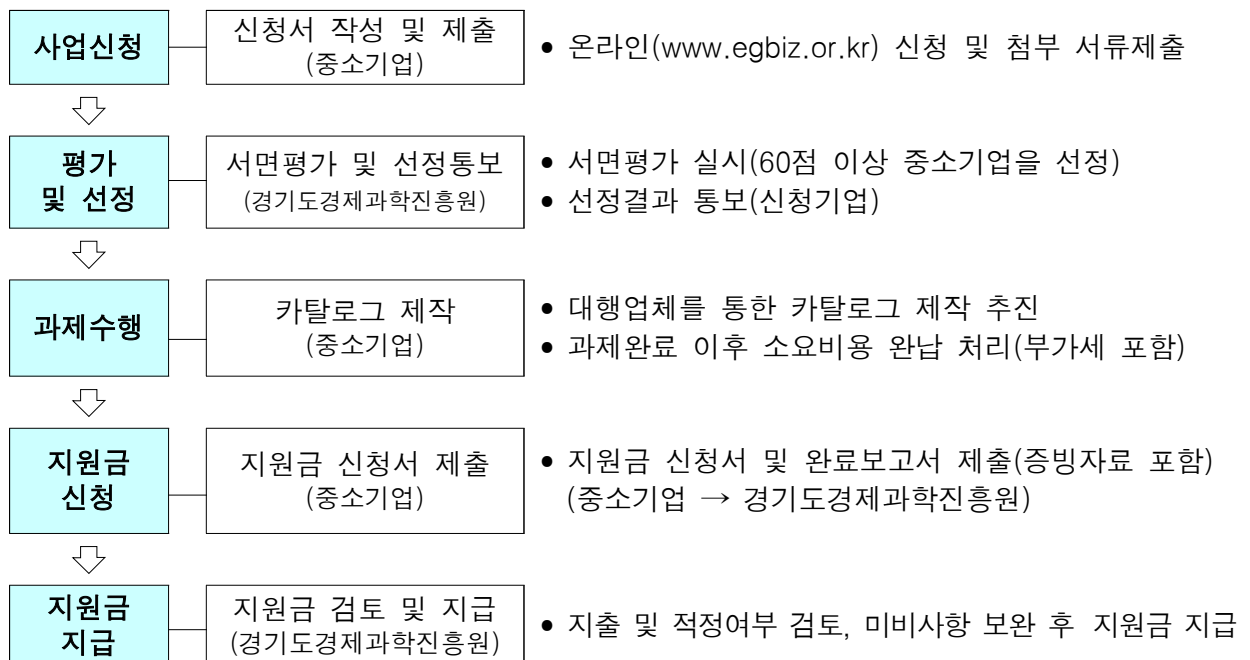
- 제작 완료 후 카탈로그(3부) 우편 제출 필수, e-카탈로그 제작의 경우 시연 영상 제출

지원분야	지원금액	지원내용
카탈로그 제작지원	총 비용의 50%, 200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내외 판로개척을 위해 국문 또는 외국어 판으로 제작하는 제품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li> <li>- 리플렛, e-카탈로그 제작 가능</li> <li>- 기업 당 연 1회 지원</li> </ul>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이미 제작된 과제 또는 제작진행중인 과제를 제출한 경우 지원 제외
- 제작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지원 제외
- 사업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지원 제외
- 카탈로그의 내용이 순수한 기업 홍보물인 경우 지원 제외 단, 해당 내용 사업담당자 검토 후 지원 여부 결정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 다. 지원절차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원신청 및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온라인 대체)</li> <li>- 카탈로그 제작 지원 추진계획서 【제32호 서식】</li> <li>- 카탈로그 제작 견적서</li> <li>-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li> <li>-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li> <li>-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li> <li>-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li> <li>- 공장등록증명서(민원24 발급) (해당시 제출)</li> <li>-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시 제출)</li> <li>-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해당시 제출)</li> </ul>
지원금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탈로그 제작 지원금 신청서 【제33호 서식】</li> <li>- 완료보고용 제출서식 【제6호 서식】</li> <li>-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li> <li>- 지원 결과물 (언어별 제작된 카탈로그) (※ 우편송부)</li> <li>-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li> <li>- 전자세금계산서, 온라인입금확인증</li> <li>-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li> <li>※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li> </ul>

### 3.11 모바일 앱 제작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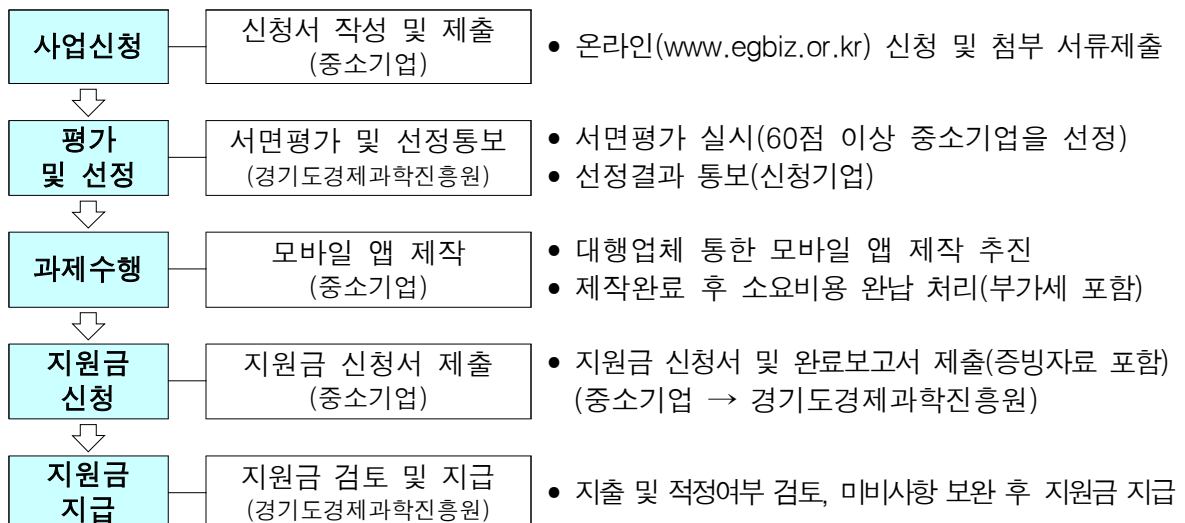
####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모바일 앱 제작 지원을 통해 e-비즈니스 활성화 및 중소기업의 대내·외 경쟁력 제고

####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 기업의 제품 홍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모바일 앱 제작비 지원
- 지원금액 : 총 비용의 50%, 최대 150만원 한도(기업 당 연 1회 지원)
  -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시 결과물 메인화면 등 이미지 첨부 필수 및 사업 담당자의 실제 실행 여부 확인 후 지원금 지급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기존 모바일 앱 수선·유지 보수의 경우 지원 제외
  - 이미 제작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과제 지원 제외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전문가(개인)에게 제작을 의뢰한 경우 지원 제외
  - 신청기업의 대표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직접 제작하는 경우 지원 제외
    - ※ 대행업체의 경우 실제 개발 및 제작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분야 표기 확인 필수
  - 제작 완료 후 앱이 실제 구동이 되지 않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제외
  - 단, 완료물 점검시점에 불가피하게(일시적) 실행이 불가할 경우 사업 담당자가 정한 기간 내 재점검 후 지급 결정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 다. 지원절차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앱 제작 지원 추진계획서 <b>【제34호 서식】</b></li> <li>-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li> <li>- 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li> <li>- 모바일 앱 구축 관련 견적서</li> <li>-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li> <li>-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li> <li>-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해당시 제출)</li> <li>-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해당시 제출)</li> <li>-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해당시 제출)</li> </ul>
지원금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모바일 앱 제작 지원금 신청서 <b>【제35호 서식】</b></li> <li>- 완료보고용 제출서식 <b>【6호 서식】</b></li> <li>- 앱 실행 영상 제출(※ 필요시)</li> <li>-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li> <li>-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b>【제2호 서식】</b></li> <li>-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li> <li>- 신청기업 지급금 지급 입금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li> </ul> <p>※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p>

### 3.12 제품 패키지 개선지원

#### 가. 지원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제품 포장 디자인 / 제작 지원을 통해 판로확대 및 매출증대 지원

####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제품 박스, 봉투, 포장지, 스티커 등 포장 디자인 / 제작·개선 지원

※ 그 외 기타 기업에 필요한 제작물의 경우 담당자 검토 후 신청가능 여부 결정

- 지원금액 : 총 소요비용의 50%, 최대 300만원 한도(기업 당 연 1회 지원)

-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제출 시 제작 및 개선 결과물 우편 제출 필수

- 유의사항 및 지원제외(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신규 개발을 우선 대상으로 하며, 기존 패키지에 대한 개선의 경우 사업 담당자 검토 후 신규 제작 수준의 개선일 시 지원 가능(※ 기존 제품에 대한 단순 수선·유지보수의 경우 제외)
- 이미 제작중이거나 제작이 완료된 과제 지원 제외
- 대행업체의 경우 실제 개발 및 제작이 가능한 업체를 선정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분야 표기 확인 필수
-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제외
-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이미 완료한 경우는 신청 및 지원 제외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 다. 지원절차



라.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패키지 추진계획서 【제36호 서식】</li> <li>-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li> <li>-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li> <li>- 포장디자인 / 제작 관련 견적서</li> <li>-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li> <li>-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li> <li>- 공장등록증명서(민원 24 발급) (해당시 제출)</li> <li>-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시 제출)</li> <li>-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해당시 제출)</li> </ul>
지원금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품패키지 지원금 신청서 【제37호 서식】</li> <li>- 완료보고용 제출서식 【제6호 서식】</li> <li>- 포장디자인 / 제작 결과물(※ 우편 제출)</li> <li>-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li> <li>-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li> <li>-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li> <li>- 신청기업 지원금 지급 입금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li> <li>※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li> </ul>

### 3.13 온라인 (소형)회의시스템 구축 지원

#### 가. 지원목적

- 온라인 기반의 비대면 사무환경 구축 지원을 통해 수요기업의 업무 디지털화 촉진 및 효율성 제고

#### 나. 지원내용

- 지원분야 : 온라인(화상) 회의 시스템 구축 위한 기본 장비 구입비용 지원
  - 사업신청 당시 회의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우대
- 지원금액 : 총 비용의 50%, 최대 150만원 한도

기본항목	지원내용
기본 장비 구축비 (소형)	- 화상 카메라, 마이크, 음향장비, 마운트, 회의 전용 디스플레이(전용 TV 및 PC) 장비 구축 비용
시스템 운영비	- 화상 회의 솔루션 임차비용(월 또는 년 단위 사용 비용) · 솔루션 임차비용 : 최소 1년 이상 사용계약 필수

\* 해당 기본항목 이외의 구축비용은 기업 자부담 편성

\*\* 시스템 운영비 : 구축된 대행업체 장비 전용 솔루션 프로그램이 없어, 무료 솔루션 프로그램을 연동하여 사용해야 하는 경우 솔루션(소프트웨어) 임차 비용 지원제외

#### 다. 지원요건

##### 1. 회의 전용공간 확보

- 화상 회의실을 최소 2년 이상 구축운영할 수 있는 전용공간 확보 필수. 사업 신청 전 회의실 구축 예정 공간을 이미 확정해논 상태이어야 함
- 기존 회의실이 없어 시설 일부를 전용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 온라인(화상) 회의실 구축 공간과 기존 일반 공간의 기능적·공간적 분리가 완료 되어있어야 함

##### 2. 시스템 솔루션(운영프로그램) 비용

- 회의 시스템 솔루션 임차비용(소프트웨어)의 경우 최소 1년 이상 사용 필수 및 시스템 구축 전문업체에서 제공하는 전용 소프트웨어 사용이 원칙임
- 시스템 구축 전문업체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가 없어, 유료로他家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 해당 건에 대한 견적서 등 비용증빙 제출 필요

#### 라. 지원제외 및 유의사항

- 화상회의 시스템 구축 관련 전문업체를 통해 회의실을 구축하여야 함
  - ※ 대행업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관련 분야 확인 필수
- 일반 쇼핑몰 및 유통업체 통해 장비를 (개별)구입하여 자가 설치하는 경우 불인정
- 기본 장비 구축 없이 단독 유료 솔루션(소프트웨어 프로그램)만 사용하는 경우 또는 기본 장비 구축만 진행할 시 지원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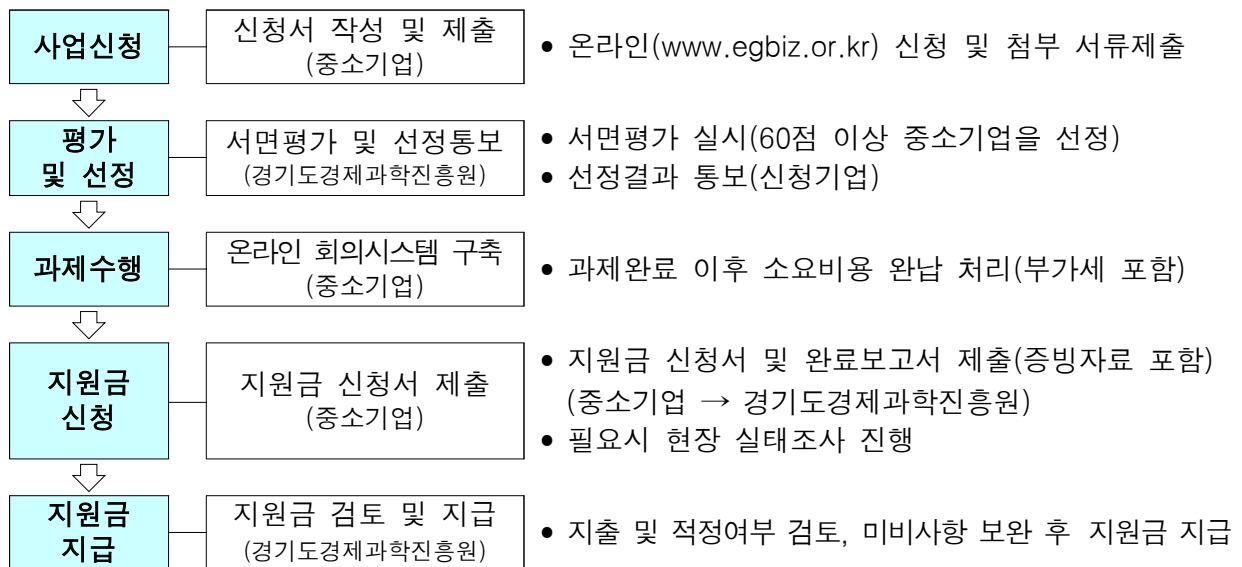


- 기본 장비 구축 후 무료 솔루션(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사용 시 솔루션 비용지원 불가
- 비용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미비점 발견된 경우
- 특별한 사유 없이 연내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이미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과제 지원 제외
- 유의사항 등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
- 그 외 기타사항은 공통 운영기준 적용

#### 마. 사업완료 및 지원금 신청

- 사업완료 후 장비 작동 및 운영 증빙문서 제출 필수(동영상 형태)
- ※ 시연 영상 녹화 본을 온라인(이지비즈)상 지원금 신청 및 사업완료보고서 제출 시 같이 첨부
- 증빙문서 부실 등 필요시 담당자 현장 실태조사 진행 후 지원금 지급여부 검토

#### 바. 지원절차



#### 사.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지원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회의시스템 구축 추진계획서 【제38호 서식】</li> <li>-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국세청 발급)</li> <li>- 구축비용 견적서</li> <li>-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li> <li>-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li> <li>- 전년도 재무제표(국세청, 세무서)</li> <li>- 공장등록증명원(민원 24 발급) (해당시 제출)</li> <li>- 국내외 각종 보유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해당시 제출)</li> <li>- 보유 산업재산권(국내외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 등록서 (해당시 제출)</li> </ul>

구분	제출서류
지원금 신청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회의시스템 구축 지원금 신청서 【제39호 서식】</li> <li>- 완료보고용 제출서식 【제6호 서식】</li> <li>- 완료 결과물(※ 사용 영상물 제출)</li> <li>- 지방세 납세 증명서(민원24 발급)</li> <li>- 지원성과 및 사업 만족도 설문서 【제2호 서식】</li> <li>-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온라인 입금증(이체확인증)</li> <li>- 신청기업 지원금 지급 입금통장사본(신청기업명 계좌)</li> <li>※ 온라인입금확인증 계좌와 지원금 입금계좌가 다른 경우 이체통장사본 함께 제출</li> </ul>

[별표 1]

##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지식서비스산업 범위

해 당 업 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
○ 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
○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582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5911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5912
○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59201
○ 전기통신업	612
○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62
○ 정보서비스업	63
○ 연구개발업	70
○ 광고업	713
○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714
○ 경영컨설팅업	71531
○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72
○ 전문디자인업	732
○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73902
○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73903
○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3904
○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3909
○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74100
○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75320
○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5992
○ 포장 및 충전업	75994

**※ 산업 업종코드 확인방법**

☞ <http://kostat.go.kr>(통계청사이트) → 통계분류포털 → 한국표준산업분류 → 검색 → 분류검색 →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확인 및 검색 → 해당업종 및 분류코드 확인

##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제외 업종 총괄표

업 종	품목코드	해 당 업 종
제 조 업	33402中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中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46102中	주류, 담배 중개업
	46109中	골동품, 귀금속 중개업
	46209中	잎담배 도매업
	46331, 3	주류, 담배 도매업
	46416中	모피제품 도매업(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
	46463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
	4764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
	47859中	성인용품 판매점
47911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오락기구, 성인용품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56211~2	일반(무도)유흥 주점업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58122中	경마, 경륜,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
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	5821中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63999中	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 게임아바타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	64~66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68	부동산업,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682)은 제외
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	69390中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전문서비스업	71531中	기획부동산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75330中	흥신소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中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113	경주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中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49	기타 gambling 및 베팅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기타 개인 서비스업	9612中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96992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中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상기 이외 표기되지 않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유흥 및 사행성 관련 또는 전문가 판단에 의거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업종은 지원 제외